

의안번호	제 28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개정 「행정기본법」(2023. 6. 28. 시행)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2 신설)에 맞게 우리 道 조례 중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에서 “만” 표시를 삭제·정비하려는 것임.

※ 만 나이 원칙에 관한 「민법」 개정(법률 19098호)시 “만 00세”를 “00세”로 개정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기업사항과 지원에 관한 조례 (안 제1조)
 - “만 60세 이상” → “60세 이상”
-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(안 제2조)
 - “만 32세 이하” → “32세 이하”
-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안 제3조)
 - “만 12세 이하” → “12세 이하”
-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(안 제4조)
 - “만 19세 미만” → “19세 미만”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
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기업
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중 “만 60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만 32세”를 “32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충청
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
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매년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제4조제1항제6호의 ‘노인일자리 창출 우수 인증기업’은 <u>만 60세</u>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20개업체 이내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60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2.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삭제</p> <p>6. “차세대농업인”이란 농업계 고등학교, 농업계 2년제대학,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</p>

<p>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7.·8. (생략)</p>	<p>----- 32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3. 충청북도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이용방법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이용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 12세 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4.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11. “다자녀 가정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.</p> <p>12. ~ 17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</p> <p>----- 19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2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행정기본법(2022. 12. 27. 법률 제191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. 6. 28. 시행 예정)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□ 민법(2022. 12. 27. 법률 제1909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. 6. 28. 시행 예정)

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만 나이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해 2023. 6. 28. 시행 예정인 개정 「행정기본법」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(제7조의2 신설)에 맞게 만 나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 소관 조례의 조문에서 “만”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